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12. 18.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8년 11월 19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8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 제1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2008년 12월 4일)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 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박주현)

가. 개 정 이 유

- 2008년 3월 21일 「도로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중 「도로법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법령이 규정한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 요 골 자

- 자동차관련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 보유면수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차등 부과하고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인하하며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의 점용료 기준을 신설함(별표1 점용료 산정 기준표)
-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함(별표1 비교 제2호)
- 수도권전력구 등 지하매설 점용물 중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함(별표1 비교 제5호)
- 점용료 산정기준 비교 조항 중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버스판매대·구두 수선대 및 가로 판매대의 연간 점용료가 700,000원을 초과할 경

우 700,000만원으로 하던 규정을 삭제함(별표1 비고 제7호, 비고 제8호, 비고 제11호)

- 개정된 「도로법」에 맞게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기타 용어 및 단위표시를 알기 쉽게 정비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별표2)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남식)

- 본 조례안은 「도로법」(2008.3.21개정)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2008.9.30개정)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중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 안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자동차관련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 보유면수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차등 부과하고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인하하며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의 점용료 기준을 신설하고
- 안 별표1 비고 제2호는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 안 별표1 비고 제7호, 제8호, 제11호는 점용료 산정기준 비고 조항 중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버스판매대·구두 수선대 및 가로 판매대의 연간 점용료가 700,000원을 초과할 경우 700,000원으로 하던 규정을 삭제하며
-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별표2에는 개정된 「도로법」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고 기타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장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86 호
----------	---------

제출연월일 : 2008.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도로상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생활정보지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주유소·주차장·근린생활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자동차 이용대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등 점용료 부과요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2008년 3월 21일 전면 개정된 「도로법」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중 「도로법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법률이 규정한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가로판매대로 통합관리되고 있는 버스카드판매대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서 삭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생활정보지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를 추가함(안제2조)
- 나.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구분의 기준을 알기 쉽게 변경함(안제13조)
- 다. 자동차관련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 보유면수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차등 부과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노점거리를 형성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점 양성화정책에 부응하여 노점에 대한 점용료를 인하하며,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의 점용료 기준을 신설함(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
- 라. 점용료 산정기준 중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함(별표 1 비고 2호)
- 마.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 점용물 중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함(별표 1 비고 5호)
- 바.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버스판매대·구두수선

대 및 가로판매대의 연간 점용료가 700,000원을 초과할 경우 700,000만원으로 하던 규정을 삭제함(별표 1 비고 7호, 비고 8호, 비고 11호)

사. 이외 개정된 「도로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기타 용어 및 단위표시를 알기 쉽게 정비함(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도로법」 제41조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2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1999.8.6>

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08. 10.23 ~ 11.11) 결과 : 별도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필.

첨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버스카드판매대”를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제3조 중 “법 제43조제2항”을 “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0조”를 “법 제38조”로 하고, “법 제80조의2”를 “법 제94조”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법 제44조제3호”를 “법 제4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75조”를 “법 제84조”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86조의 2”를 “법 제101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40조”를 “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고,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세입구분) 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 수입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
2. 제1호 외에 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공중 전화등 시설물	전주,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 방송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교통량검지기,주차측정기,유체통,소화전,모래함,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송전탑,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 액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배수관,농업용수관,전기송신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송열유관,작업구(맨홀), 전력구,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외경 0.1미터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외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2,400			
		외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4,850			
		외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7,250			
		외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9,650			
		외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12,100			
		외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18,100			
		외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30,150			
		외경 3.0미터초과			42,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카,잠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외경 0.1미터이하	1,800		
	외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				3,600			
	외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				7,200			
	외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				10,850			
	외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				14,400			
	외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				18,100			
	외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				27,100			
	외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				45,200			
	외경 3.0미터초과				63,250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현수막·사설안내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 점용) 기 타	표시면적 1㎡	1일
							1년	122,0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58,4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01,650				
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		표시면적 1㎡	1일	400				
아 취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244,000			
	기 타	122,000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5를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5를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6를
		4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6를
	진·출입로	자동차관련시설(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등)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를 곱한 금액	0.025
기타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20를			
5.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4를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1를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1를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1를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07를	
	육교상가·기타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2를
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1를
		노점·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2를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5를
8.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 사용 시설 및 재료·굴착부분 기타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40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5를
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 차장·광장·공원·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2를
10.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고시 한 재래시장의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를 곱한 금액	0.0001
11.제1호 내지 제10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 획물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1를
		주 택			토지가격에 를 곱한 금액	0.025
		기 타			토지가격에 곱한 금액	0.05를

※비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5.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7.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관련)

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부과기준	과태료 상한금액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	법 제101조 제1항제1호	초과면적 1㎡이하 50,000원, 1㎡를 초과하는 매 1㎡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	3,000,000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한 후 관리청에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법 제101조 제1항제3호	3,000,000원	3,000,000원
3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법 제101조 제1항제4호	3,000,000원	3,000,000원
4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법 제101조 제1항제2호	점용면적 1㎡ 이하 100,000원, 1㎡를 초과하는 매 1㎡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	3,000,000원
5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굴착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후 관리청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 제2항제2호	미 확인기간 1일마다 5,000원	500,000원
6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 도로를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 제2항 제3호	미 검사기간 1일마다 5,000원	500,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조례안	개정 조례안
<p>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물로서 영 제24조제5항제11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p> <p>3. (생략)</p>	<p>제2조(도로점용허가)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u>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u>, -----</p> <p>----- <u>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p>	<p>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u>법 제41조제2항</u></p> <p>-----</p> <p>-----</p>
<p>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u>법 제80조의2</u>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p> <p>②~④ (생략)</p>	<p>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u>법 제38조</u></p> <p>-----</p> <p>-----</p> <p>----- <u>법 제94조</u> -----</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u>국유재산법 시행령</u>」 제56조의2에 따른 이자로 한다. 다만, 「<u>지방세법</u>」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나누어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p>	<p>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u>「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제2항</u> -----</p> <p>-----</p> <p>-----</p>
<p>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u>법 제44조제3호</u>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p> <p>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u>법 제75조</u>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 ① -----</p> <p>-----</p> <p>----- <u>법 제42조제3호</u> -----</p> <p>-----</p> <p>② -----</p> <p>----- <u>법 제84조</u> -----</p> <p>-----</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조례안	개정 조례안
<p>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u>법 제86조의 2</u>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 <u>법 제101조</u></p> <p>-----</p> <p>-----</p>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40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3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받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고,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제13조(세입구분)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은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으로 한다.

제13조(세입구분) 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 수입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

2. 제1호 외에 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정용료	정용료	
				정용료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 포함한다)·현수막·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수막(중교행사나 중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	표시면적 1㎡	1일	4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잔·출입로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7.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11. 제호 내지 제10호의 공작물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정용료 (단위: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3. (현행과 같음)	현수막(제사나 중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	표시면적 1㎡	1일	400
4. (현행과 같음)	잔·출입로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잔·출입로
7.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11. (현행과 같음)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현행 조례안

- ※비고
- (생략)
 -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 (생략)
 -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의

개정 조례안

- ※비고
- (현행과 같음)
 - -----
----- <삭제>
 - (현행과 같음)
 - 금
액 중 -----
 - 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

-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6. (생략)
7. 위 표 제3호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위 표 제6호의 “기타”에는 다음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위 표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송전·탑·변압기·저장고·기타”의 점용물
 나. 위 표 제4호·제5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다. 위 표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버스카드판매대 이외의 점용물
 라. 위 표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일시 설치한 것” 이외의 점용물
 마. 위 표 제10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주택” 이외의 점용물
- 9.~10. (생략)
11. 위 표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버스카드판매대·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는 점용료 산정총액이 연간 7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700,000원으로 한다.

-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현행과 같음)
7. <삭제>
8. <삭제>
- 9.~10. (현행과 같음)
11. <삭제>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

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부과기준	과태료 상한금액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	법 제86조의2 제1항제1호	초과면적 1제곱미터 이하 5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매 1제곱미터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	3,000,000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한 후 관리청에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법 제86조의2 제1항제2호	3,000,000원	3,000,000원
3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임의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법 제86조의2 제1항제4호	3,000,000원	3,000,000원
4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법 제86조의2 제1항제2호	점용면적 1제곱미터 이하 10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매 1제곱미터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	3,000,000원
5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굴착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후 관리청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86조의2 제2항제3호	미 확인기간 1일마다 5,000원	500,000원
6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 도로를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86조의2 제2항제4호	미 검사기간 1일마다 5,000원	500,000원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

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부과기준	과태료 상한금액
1	(현행과 같음)	법 제10조 제1항제1호	초과면적 1㎡ 이하 50,000원, 1㎡를 초과하는 매 1㎡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법 제10조 제1항제3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법 제10조 제1항제4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법 제10조 제1항제2호	점용면적 1㎡ 이하 100,000원, 1㎡를 초과하는 매 1㎡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법 제10조 제2항제2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법 제10조 제2항제3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